

第242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8月21日(木)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2.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3.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代案)
4. 근로기준법개정에관한청원
5. 법정근로시간단축에관한청원
6. 백두대간보전법안(계속)

審査된案件

1.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송석찬·최영희·문석호·설훈·김옥두·김근태·이강래·조재환·원유철·이재정·김덕규·이희규·최용규·장성원·유재규·박용호·정범구·이훈평·문희상·이근진·김희선·김태홍·박주선·전용학·안동선·장성민·임종석·이창복·김화중·이호웅 의원 발의)(계속) 1
2.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1
3.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代案) 1
4. 근로기준법개정에관한청원(박인상 의원 소개로 제출) 1
5. 법정근로시간단축에관한청원(김문수 의원 소개로 제출) 1
6. 백두대간보전법안(박인상 의원 대표발의)(박인상·김덕규·김락기·박혁규·서병수·신계륜·오세훈·전재희·김무성·김문수·김성호·김영환·김태홍·박상희·배기운·송영길·유용태·유재건·유한열·이미경·이부영·이호웅·정범구·조성준·천용택·최영희 의원 발의)(계속) 1

(11시37분 개의)

○**委員長 宋勳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立法調査官 李廷得**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김희선·김태홍·박주선·전용학·안동선·장성민·임종석·이창복·김화중·이호웅 의원 발의)(계속)

2.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계속)
3.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代案)
4. 근로기준법개정에관한청원(박인상 의원 소개로 제출)
5. 법정근로시간단축에관한청원(김문수 의원 소개로 제출)

1.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송석찬 의원 대표발의)(송석찬·최영희·문석호·설훈·김옥두·김근태·이강래·조재환·원유철·이재정·김덕규·이희규·최용규·장성원·유재규·박용호·정범구·이훈평·문희상·이근

6. 백두대간보전법안(박인상 의원 대표발의)(박인상·김덕규·김락기·박혁규·서병수·신계륜·오세훈·전재희·김무성·김문수·김성호·김영환·김태홍·박상희·배기운·송영길·유용태·유재건·유한열·이미경·이

부영·이호웅·정범구·조성준·천용택·최영희 의원 발의)(계속)

(11시40분)

○委員長 宋勳錫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宋錫贊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에서 제출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朴仁相 의원이 소개한 근로기준법개정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5항 金文洙 의원이 소개한 법정근로시간단축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6항 朴仁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백두대간보전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申溪輪 법안심사소위원장 申溪輪 위원입니다.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과 백두대간보전법안에 대하여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朴仁相 위원, 吳世勳 위원, 李承哲 위원, 全在姬 위원으로 구성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부 소관으로 근로시간 단축, 주5일 근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宋錫贊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본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 제출 근로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0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체토론 및 공청회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그리고 宋錫贊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본법중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근로기본법중개정법률안 및 관련 청원 2건을 중심으로 대안을 작성,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宋錫贊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본법중개정법률안, 金文洙 의원이 소개한 법정근로시간단축에관한청원, 그리고 朴仁相 의원이 소개한 근로기본법개정에관한청원 이상 2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근로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현재 1주간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

하였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확대하였고, 둘째 휴가일수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되 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조정하면서 월차 유급휴가와 유급 생리휴가를 폐지하였으며, 셋째 시행시기는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5년 7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상시 2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하였고, 넷째 부칙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안소위 심의과정에서 소수의견으로 법 제55조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제59조 연차휴가일수는 15일에서 25일로 하되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1월당 휴가일수를 1.5일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아울러 부칙 1조 시행시기를 앞당겨서 2004년 1월 1일에 금융·보험, 공공부문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부터 시작하여 2008년 1월 1일에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며, 부칙 제4조 임금보전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분 4시간에 대하여 조정수당으로 보전하되 다만 이 조정수당을 월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단협 변경노력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법안소위 소위원장으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주40시간 근로가 차지하던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큼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태를 감안해 볼 때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늦춰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는 지적이 많았음을 다시 한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소관 법률안으로 朴仁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백두대간보전법안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 법안으로서 국회법 제58제5항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동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이미 실시했고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안 심사에 수고하신 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勳錫** 申溪輪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양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각각 한 분씩 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나라당 金樂冀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樂冀 委員** 金樂冀 위원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법안 통과를 하고자 하는 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宋勳錫 위원장님, 그리고 법안심사를 하신 申溪輪 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또 법안을 제출하신 노동부장관님!

주5일근무제는 나라 장래를 위해 정말 올바르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지난해 7월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 대체토론 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지적했던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연히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당 방침이라는 미명하에 이를 포기하고 자구 하나 수정 없이 정부 원안대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는 것은 한없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본 위원은 정말로 자괴감을 느끼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주5일근무제 도입에 관한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한 반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주5일근무제는 전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우리 사회의 균등발전과 분배정의 실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제도화되어야 하며, 경제·사회 전 부문에 걸쳐 그동안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선진화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의 내용과 추진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고속성장과정에서 그늘지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IMF 이후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800여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여성 노동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우대하여 이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전체 국민과 노동자들의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있으며, 오히려 현행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킴으로써 더 큰 분노와 절망을 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연간 2500시간이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것은 기본급 외에 초과근로수당이나 연월차 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째, 정부 법안 내용을 보면 경제상황은 언제나 싸이클이 있는데도 다소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요즈음 시점을 기회로 인건비 상승 등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일부 기업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반영시켜 연월차 휴가 수당 및 잔업수당, 생리휴가 수당 등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계임금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노동시간 단축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인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경제발전에도 역행하는 임금삭감 조항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안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둘째, 정부 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7년에 걸쳐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쟁력이나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주5일근무제의 근본 취지가 장시간 노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인데 6~700만 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공기업이나 대기업 노동자들보다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으며, 결국 대다수 노동자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동계층 내 차별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주5일근무제의 시행시기를 앞당겨 2년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불공정한 원·하청구조 개혁, 세제·금융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정부안은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15일에서 25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이 제시한 18일에서 22일과 비교해 볼 때 대다수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즉 연차휴가가 공익위원안보다 많은 23일이 되려면 17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데 17년 이상 근속자는 약 87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6.6%에 불과하며 나머지 93.4%는 공익위원안보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최초 휴가일수를 18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가 법 개정의 기본원칙에서도 밝힌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년 미만의 계약직 임시·일용직노동자들에게 1개월간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 정부안을 수정해서 1개월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주5일근무제 도입은 노동자는 물론 전체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되어야 합니다.

주5일근무제를 정부 원안대로 도입했을 시 이를 둘러싼 각 경제주체 간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어 제도 도입의 취지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또다시 잡는 우려를 범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사 간 이해와 신뢰의 바탕 위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산업사

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상임위원회는 정부 법안을 전면 재검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勳錫** 金樂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朴仁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 委員** 아침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말 주5일제라는 것은 엄청나게 변화하는 질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면서 이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당론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간다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위원으로서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제 소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본 위원이 경총의 임금상승률 추계를 비판하는 자료를 발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동부에 보냈는데 장관께서 보셨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보았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런데 경영계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노동계 안을 100% 받으면 22%가 올라간다고 했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22.1%인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제가 아무리 분석해도 그것은 허구였는데 노동부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허구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임금이 인상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 가정이 상당히 높은 임금인상률을 결과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깔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래서 엇그제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오셨을 때 질의해 보았습니다.

“정말 22%가 올라갔습니까?”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계산해 보았더니 15% 정도, 물론 계산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2% 정도였습니다.

노동부 의견도 비슷하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정확한 수치는 그렇습니다. 마는 노동계의 단일안을 그대로 받았다고 했을

때 가정에 따라 다름이다라는 10% 내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朴仁相 委員**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마치 노동계는 전혀 경영계를 생각 안 하고, 경제를 생각 안 하고 오르는 것만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반박자료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고 나서 항의문이 저한테 도착한 것은 없습니다.

노동부도 제 의견에 대해서 수궁이 가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아까 말씀의 되풀이입니다. 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가정 하에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워낙 다릅니다.

마이너스%에서부터 22%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朴 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치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朴仁相 委員**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상임위원회를 접하면서 솔직히 저는 소회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인 주5일제 법안이 오늘 어찌 보면 이 상임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5일제는 국민들의 삶과 문화를 바꾸어 놓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마땅히 국민의 열렬한 지지 속에 또 환영 속에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까라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안타까움과 비통한 심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법안이 심의 되는 과정에서 주5일제의 당사자 즉 노동계의 이유 있는 항변은 철저히 무시되어 버렸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노동조합에 있거나 국내 굴지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 법에 구애 받지 않아도 확실하게 정리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88%의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며 그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체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법적 마지노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률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회는 사실상 어려운 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검토해 보았는지 솔직히 반성은 해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과 관련해서 소위원회

회에서 저의 안을 말씀드린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대폭 양보를 해서 가지고 토씨가 몇 개는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이 법안은 정부안과 똑같습니다. 한 가지 딱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시행시기가 1년씩 미루어졌습니다. 기존의 정부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의 수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300인 이하 전 사업장에 대해 시행시기까지 모두 연기한 것은 지나친 정도를 넘어서 완전히 무책임해 보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기존 정부안보다 후퇴한 것입니다. 어떠한 논리적인 이유를 갖다댄다고 하더라도 2011년까지 늘어진 시행시기를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부장관님, 2011년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정부 원안은 방금 朴仁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03년 7월 1일부터 대기업부터 시작하고 2010년까지 전 기업에 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법안을 제출한 시기가 작년 10월이었고……

○**朴仁相 委員**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1년까지 연기시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정했다라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시기를 1년이나 늦춰야 할 이유는 없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에 널 적에 올해 7월 1일부터였으니까 꼭 내년 7월 1일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약간의 여유가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朴仁相 委員**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법안소위원회에서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정부에서는 마련하는 전제 하에 앞으로 5년 뒤인 2008년 1월 1일쯤이면 전 사업장에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또 2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의 46%입니다. 이들에게 2011년 이후

에나 적용하겠다는 이 법률안은 정말 영세 노동자들에 대한 국회의 무성의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1년이면 앞으로 8년이 남았습니다. 말이 좋아 8년이지 정말 까마득한 시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이들로부터 어찌 보면 주5일 아빠, 주6일 아빠로 나누어져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불평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는 책임을 지고 느끼면서 정리를 해왔는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법률안은 2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배제한 채 국민의 절반만 혜택을 주는 반쪽짜리 주5일제 법률안입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행 시기는 반드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의 대가를 임금 이외의 다른 것으로 보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임금 아닌 다른 것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은 원천무효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입니다. 외국 사례도 거의 없고 국제기준도 아닙니다. 입법의 근거도, 타당성도 부족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장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정부안에서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한 것은 원 취지인 법정근로시간만 줄어들어서 되겠느냐, 실제 휴가사용의 폭이 넓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도입되었습니다.

○**朴仁相 委員** 장관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단적으로 표현해서 일을 시켜 놓고 휴일이니까 휴가일수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초과근로를 휴가를 줌으로써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朴仁相 委員** 노동이라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법리상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지금 장관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원칙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장관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국제기준으로부터 소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계속 정부에서 ‘국제기준 국제기준’ 하는데 휴가일수에 대한 국제기준을 따르자면 비정규직에게 1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도 국제기준에 맞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그때 말하는 국제기준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朴仁相 委員** 또 국제기준이 달라집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현행도 월 1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仁相 委員** 월 1일이라면 12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그렇습니다.

○**朴仁相 委員** 특히 이 부분은 비정규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5일로 하면 18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출발이 15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10월까지 근무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15일부터 출발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그것이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이었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호소했는데 소위에서는 토씨 하나도 못 고친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왔습니다.

뭣 위원님, 저 쳐다보고 있는데 좀 고쳐 주십시오.

이제 임금보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법률안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 분이나 연월차 휴가 단축 분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달리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수당의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朴仁相 委員** 그리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저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사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당 임금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44시간이라면 정상유지가 됩시다라는 40시간으로 줄었을 때에는 4시간 분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휴가 깎아버리고 임금을 깎을 수 있는 주5일제가 되어서야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사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급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근로시간 및 휴일 단축 분을 조정수당의 이름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 이것은 기존 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방법이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기본적으로 현 정부 안에서 임금 수준의 저하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朴仁相 委員** 말은 나와 있는데 제도장치가 있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현실적으로도 임금은 어차피 기업의 지불능력 범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고요. 임금인상 분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불능력이 조금 취약한 기업에서 임금인상 폭이 많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 법개정 이전에 받았던 총액임금 수준이 저하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朴仁相 委員** 장관,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임금보전은 확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어떤 임금보전이나에 따라서 다릅시다라는 총액임금이 법 개정 이전보다 내려갈 수는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알겠습니다.

연간 2400시간이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은 연장근로가 없이는 생계보장을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저임금 기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연월차의 절반도 쓰지 못하면서 이를 사실상의 임금으로 생각하고 가계부를 써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입니다.

전체 급여 대비 통상임금의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안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수준 정도로만 임금보전을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아닌지 의문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애매모호한 법조문으로 인해서 근로조건 결정과정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미조직노동자들은 월 소득의 감소와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 휴가수당의 불이익을 당할 것이 눈에 뻘히 보입니다.

아마 이것을 노동부에서는 보장한다고 하는데 노동부 인력으로 사용자의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습니까? 자신합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기본적으로 임금이 법 개정 이전보다 내려가는 일은 적어도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朴仁相 委員** 어떤 식으로도 내려가도 안 된다고 막을 자신이 있다 이거지요?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이 법률안은 앞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와 더불어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노동계는 자신들이 억울하게 빼앗겼다고 생각되는 만큼 더더욱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요구가 내년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와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하는 노동계의 소외감은 가뜰이나 전투적인 투쟁 경향성을 강화하는 촉매제로 기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노동계의 이유 있는 항변에 대해서 정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법안에 반영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두고두고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노사관계의 격랑 한 복판에서 평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라는 그런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본다면 이 법률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반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고성능 폭탄을 매설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 사려 깊은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여러분들이 거두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간곡한 부탁입니다.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勳錫** 朴仁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吳世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宋勳錫 吳世勳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吳世勳 委員 오늘 발언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양당을 대표해서 한 분석 발언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金樂冀 위원이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발언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委員長 宋勳錫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吳世勳 委員 그런 맥락에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金樂冀 위원님 그리고 朴仁相 위원님, 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참으로 깊은 고민 속에 있었던 지난 며칠이 생각나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원래 정부안은 여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마 보편적인 형태의 법안 처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에 따라서는 이번 사안의 경우 정부안을 오히려 여당 쪽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양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부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국민적인 오해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朴仁相 위원님께서 구구절절이 노동자의 입장에 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법안을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지금 염려하신 영세한 중소기업체의 근로자들이 좀더 좋은 조건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만들었다면 더욱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경제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어려운 회사들일수록 국외로 공장을 이전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모든 판단은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좀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기업을 못 하겠다는 판단 때문에 우리의 공장들이 중국 같은 곳으로 계속 빠져나갔을 때 그 영세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어디에 가서 보호를 받겠습니까?

이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믿고 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법안

을 통과시켜야 정부가 구상했던 대로 마음껏 경제정책을 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부안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도 법안을 낼 때 여당과 보다 긴밀히 협조한 상태에서 의견을 통일해서 법안을 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勞動部長官 權奇洪 예, 알겠습니다.

○吳世勳 委員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법안을 내면 비록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정부안을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안이 제출되기 전에 미리 검토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기왕 제출되면 그에 대해서 다른 수정사항을 내놓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상임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저께 법안심사소위가 심의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朴仁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宋勳錫 朴仁相 위원님, 발언하세요.

○朴仁相 委員 방금 존경하는 吳世勳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주5일제 문제를 왜 지금까지 가지고 왔느냐, 한 3년이 걸렸는데, 토론하자고 할 때 사실 앞에 있는 한나라당에서도 그랬지만 노사 간에 합의가 나오면 하자 해서 계속 토론을 했고 그래서 결국 소위원회에 못 넘겼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노사정의 합의가 나오면 처리하는 것이 어땠겠는가 해서 이것이 기다려졌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당이 되어서 정부안을 내더라도 개개인 위원들 간에는 견해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주5일제는 여러분이나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노사가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해 오면 우리는 그 근사치에서 중심을 잡으면 문제가 풀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 21일 노사 간에 거의 합의선상에 왔을 때의 기준으로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이렇게까지 혼란이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당론으로 확실하게 결정이 되고 한 자도 고칠 수 없는 방향으로 가 버리니까 여러분도 불편해지고 같이 있는 우리들도 서로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문제는 다른 것과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다는 보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분은 보듬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宋勳錫** 아까 제가 의사진행 중에 金樂冀 위원님과 朴仁相 위원님께서 양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발언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吳世勳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양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발언신청한 것이 아니고 각자 위원 자격으로 하셨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가 필요하다는 축조심사는 소위원회에서 충실하게 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전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 委員** 위원장님, 토론 종결입니까?

○**委員長 宋勳錫** 지금 토론하셨잖아요. 다른 분은 하실 분이 없고요.

○**朴仁相 委員** 그러면 통과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 宋勳錫** 이제 의결을 해야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宋錫贊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에서 제출한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신 의사일정 제3항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朴仁相 委員**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委員長 宋勳錫** 예, 양해하시지요.

○**金樂冀 委員** 반대했으면 반대하는 사람에 대

해 찬반을 물어야지요.

○**委員長 宋勳錫** 이의가 있으면 표결해야지요.

○**朴仁相 委員** 수정안을 냈으니까 앉아서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더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인은 퇴장하겠습니다.

(朴仁相 위원 퇴장)

○**金樂冀 委員** 찬반토론을 했는데 토론에 대한 논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해야지요.

○**委員長 宋勳錫** 이의가 있으면 표결해야지요. 없을 경우에 표결 없이 가는 것입니다.

○**金樂冀 委員** 저 같은 경우는 이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宋勳錫** 그러면 원칙대로 표결하겠습니다만 金樂冀 위원님, 꼭 표결하셔야 되겠습니까? 양해하실 수 없습니까?

아까 반대의사는 충분히 밝혔고……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사전에 양당 간사 간에 반대토론을하기로 하고 표결은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金樂冀 위원, 양당 간사 간의 의견을 존중하시겠습니까?

○**金樂冀 委員** 표결을 못 하겠다면 퇴장하겠습니다.

(金樂冀 위원 퇴장)

○**委員長 宋勳錫**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련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朴仁相 의원이 소개한 근로기준법개정예관청원, 의사일정 제5항 金文洙 의원이 소개한 법정근로시간단축예관청원, 이상 2건의 청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백두대간보전법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동 법안은 제정법안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법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법조문을 읽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조문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제1조 목적규정부터 제21조 양벌규정까지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에서 제6조까지로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백두대간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은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로 백두대간보전기본계획 및 보전지역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에서는 백두대간보전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벌칙에서는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안의 각 조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백두대간보전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백두대간보전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 통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部長官 韓明淑** 존경하는 宋勳錫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부 소관 법률인 백두대간보전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환경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검토해 주시고 애써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申溪輪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정안이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단절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주신 좋은 의견은 앞으로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勳錫** 노동부장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勞動部長官 權奇洪** 존경하는 宋勳錫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부 소관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을 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법안 하나하나를 검토해 주셨고 애써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申溪輪 소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계기로 해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휴가제도 등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원래 의도했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사실은 주 40시간 근로제가 생산성 향상, 근로자들의 능력 증대, 창의성 확대 등을 통한 질적 성장의 도모라는 측면이 오히려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임금보전 문제 등이 중심으로 부각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단을 내려 주셨으니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신 사항들, 특히 오늘 朴仁相 위원님과 金樂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 문제 등등이 법 집행 과정에서 큰 문제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가고 그 과정에서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宋勳錫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勳錫**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2003년 8월 19일 관련위원회로서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前日까지 의견제시기간
을 정하여 회부됨.

○出席委員(13人)

金 德 圭 金 樂 冀 朴 仁 相 朴 赫 圭
徐 秉 洙 宋 勳 錫 申 溪 輪 吳 慶 勳
吳 世 勳 李 康 斗 李 承 哲 洪 文 鐘
洪 在 馨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河 鍾 範
진 문 위 원 李 正 樹

○政府側參席者

환 경 부
장 관 韓 明 淑
기 획 관 리 실 장 李 圭 用
노 동 부
장 관 權 奇 洪
차 관 朴 吉 祥
기 획 관 리 실 장 鄭 秉 錫
근 로 기 준 국 장 宋 永 重

【報告事項】

○議案回附

騒音・振動規制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대
표발의)

(8월 16일 안상수·최선영·박희태·박명환·
김정부·장성원·박창달·정문화·강재섭·
김용학·이윤성·안택수·이인기·오경훈·
이재오·박진·이성현 의원 발의)

8월 19일 회부됨.

勞動基準法中改正法律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

(8월 18일 손희정·이승철·이미경·오경훈·
권기술·임진출·이원형·박재욱·박진·정
범구·박근혜·심재권·박주천·강숙자·이
연숙·이낙연·하순봉·이해봉·김근태·이
재오·강창희·조배숙·박명환·안상수·김
용학·박시균·김경천·권영세·안택수·전
용학·장성원·박창달·김정숙·김홍신·윤
경식·전재희·강재섭·엄호성·남경필·임
인배·최영희 의원 발의)

8월 20일 회부됨.

이러닝산업발전법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

(6월 12일 이상희·김원길·김택기·김형오·
남궁석·박상규·서상섭·이근진·강인섭·
이승철·이재오·이재정·유한열·조성준·
최병렬·최선영 의원 발의)